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00회 제2차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검 토 보 고 서

2023. 11.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 11. .
운영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김장관 의원 외 6명(이진환, 정순옥, 박정환, 김기열, 황국주, 임미연)

○ 발의일자: 2023. 11. 3.

○ 회부일자: 2023. 11. 3.

○ 검토기간: 2023. 11. 6. ~ 11. 10.

2.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을 도입하고, 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기준 변경 및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등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규정 신설(안 제12조의2)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규정 정비 (안 제13조 및 안 별표 4)

○ 특별휴가 규정 정비(안 제14조제5항 및 안 별표 5)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제7조, 제7조의7, 별표 1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 비용추계: 비대상

○ 입법예고(2023. 11. 3. ~ 11. 13.)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2023. 6. 13., 2023. 7. 18.)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12조의2는 공무원의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해 근무시간 외 또는 토요일,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 안 제13조 및 안 별표 4는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해당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되는 일수를 2일에서 3일로 각각 확대하였음.
- 안 제14조제5항은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 특별포상휴가를 5일에서 연간 10일로, 안 별표 5는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그 공무원에게 주는 출산휴가를 15일로 확대하는 규정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복무 여건 향상으로 직무수행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침 >

【관계 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 · 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재직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2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14
3년 이상 4년 미만	15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별표 1] 경조사 휴가일수표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 <개정 2023. 7. 18.>

경조사 휴가일수표(제7조의7제2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1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비 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① ~ ⑫ 생략

⑬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국가 또는 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